



2002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권 강 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I. 머리말

IMF 지원체제하의 어려웠던 우리경제도 그 간의 기업 구조조정·수출회복 등에 힘입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경기의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정을 둘러싼 여건도 부동산 시장 등 완만한 경제 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수도 점진적으로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기업의 재무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못함에 따른 체납세액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수 측면에서 그리 밝지 아니한 실정이다.

그리고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납세자인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과세의 투명성·합리성 및 다양한 납세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요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Cyber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 사용의 상용화 및 전자금융 및 상거래의 보편화 현상으로 이를 활용한 전자세정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은 첫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둘째,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식의 도입등을 통한 납세자와 함께하는 시책을 발굴·보급하고 셋째, 지방세정 운영 System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I. 지방세정의 나아갈 방향

1. 지방화를 뒷받침하는 세수 확충

가. 지방세수 확충의 기본방향

금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지방세 예산액은 24조 9,032억원(지방교육재정에 이전될 지방교육세 3조 2,773억원을 포함)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6.1%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토지·건축물

등 과세자료의 일제정비 및 D/B구축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과세 대상 재산, 비과세·감면 분야 및 불성실 신고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세수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특수세원의 개발 등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원의 균형배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의 도입문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협조체제의 구축이 절실한 시기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현재 건물물 이외의 상각자산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불형평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기계장치등 자산가치가 있는 상각자산의 과세대상 추가문제도 사회경제여건에 맞추어 적극 연구·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지방세 과표의 합리화·적정화 추진

각 시도에서 취득세·등록세 토지과표를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바로 적용함에 따라 필지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불형평한 경우가 있어 토지과표 적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실태를 분석하여 매우 불합리한 것이 발견되면 지가산정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위산(違算)·오기(誤記) 등에 의하여 명백하

게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과세권자가 가감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토지과표도 과표현실화의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간·필지간 과표의 격차를 해소하여 과세형평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건물과표의 경우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각종 지수·가감산율 등 적용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재산세의 부과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물과표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의 제고 등을 위해 우리부에서 시도와 함께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의 도입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부터 새로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는 송전철탑, 열수송관,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방송중계탑의 정확한 과표 적용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원권 등의 과세대상물건의 가격변동 상황에 따라 과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적기에 재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 고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만해소와 신뢰받은 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체납없는 지방세 지방세정운영

지방세 체납액은 IMF 지원체제하('97~'98년)에 급증되었으나 최근 징수여건이 다소 호전되고는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의 체납세 징수전망도 그다지 밝지 아니한 편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현년도 징수율

96% 달성, 과년도 체납액 30% 정리」를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 정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질적·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의 적극적인 정리도 추진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강제 인도 및 공매 등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공매처분의 확행,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의 강화, 출금금지의 요청,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인인 체납자의 경우는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를 활성화하여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동시에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하여야 하겠다.

라. 숨은세원의 철저한 발굴

숨은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자료의 정비·관리 및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과세자료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항목은 토지의 소유자 변동사항, 지목 변경사항, 비과세·감면분 변동사항, 과세누락 토지 대사 등과 건축물의 구조·용도 등 실태, 무허가 신·증축, 개수,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 재산실태, 화재위험 건축물 사용실태, 비과세·감면, 과세누락된 건축물 조사 및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의 소유자 변동사항, 과세누락, 구조변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완벽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미이행 등 지방세를 탈루 및 세원의 은닉의혹이 있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 권리현장의 교부 등 친절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지방세 세무조사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누락세원의 포착,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내역의 적정 여부, 본점사업용, 법인 신·증설로 인한 중과세에 해당여부,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내에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2. 납세자와 함께하는 시책의 지속 개발·보급

가. 납세자 권리신장에 부응하는 세정운영

오늘날 세정운영의 방향은 과세권자 위주에서 납세자 위주의 세정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있어서도 '97. 10. 1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지방세정인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서류 등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과세정보의 비밀보호,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지켜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에 따른 불복이 있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에 대비하여 불복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임의전치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납세편의를 위한 IT 이용의 활성화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경제거래에 인터넷 및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산·보편화되면서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인터넷 납부제, 자동이체 등을 다양하게 도입·시행중이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납부방식을 더욱 다양화하는 동시에 납세홍보 등을 통해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납부제, PC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납부제등은 더욱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세 인터넷 고지제를 도입토록 추진하여 납세편의와 행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의 활성화

지방세정의 효율화·신속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전산화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면서 관련 업무와의 통합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지방세전산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기능진단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산기기 및 S/W를 확충하고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무부서 공무원의 전산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가의 확보로 지방세전산시스템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세목간의 연계활용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의 DB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무부서와 건축, 위생, 자동차등록, 지적 등의 세원관련 부서와 전산망으로 연계하여 신속·정확한 세원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체납통계 관리시스템의 운영도 DB의 완벽한 구축 등 발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겠다.

3. 세정운영의 신뢰성·효율성 제고

가. 민원처리 자세의 적극적 쇄신

지방세 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어 있어 적법·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지방세 민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한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실확인 또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가능한 민원처리의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세무행정분야 민원처리 행태도 그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법령상으로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등을 의식하여 민원인에게 상급부서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닌 사실판단의 문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민원 상담시 담당자의 연결지체 또는 통화중단 등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하며 직원별 좌석안내도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민원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는등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처리 자세로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나. 지방세 비리방지시책 지속적 추진

지방세 취약요소에 대하여 집중·반복적인 점검을 통하여 비리유발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방세 수납검색체계의 완벽한 구축과 세무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비리예방적 시스템을 가동함과 아울러 감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

토록 해야 한다.

또한 정기감사시에 취약분야를 필수적인 감사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인 감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히 새로운 유형의 비리발생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체납세의 징수와 관련된 법원배당금은 반드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령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조례에 따라 10~30만원)는 반드시 일련번호가 인쇄된 영수원부의 사용여부, 소액 현금수납부의 비치 여부 등 현금수납분야 및 등록세 등 지방세 수납사항의 일일결산 확행여부, 수납금고은행의 점검여부 등 지방세 수납사항의 확인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사기진작 시책 적극 추진

21세기 지방세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지방세정인의 양성과 연구과제연찬 및 지역간의 세무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지방세정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중앙단위의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시도단위 연찬회의 개최 및 포럼, 연구모임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단위의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례·판례 위주의 참여식 교육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고 체납액정

리의 실무, 등 분야별 교육시간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세무 담당공무원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시 교육비의 지원 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읍면동의 기능전환후 지방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 후 조직 및 인력은 축소되었으며 단수직으로 운영되던 정원이 복수직(행정, 세무)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많아 세무조직의 전문화에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무조직의 적절한 운영과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무평정시 세무직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인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정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는 지방세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문가를 선정·관리하여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위촉 활용하고, 지방세관련 세미나·공청회 개최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세에 친화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라.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홍보 강화

21세기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홍보기법 등을 지방세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은 내고장의 공공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지방세 현황, 지방세법령 및 감면조례 개정내용, 유권해석 사례, 심사청구 사례, 지방세 납부방법 등 최신내용을 충실히 담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Cable TV와 뉴스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상공회의소(합동세무정보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방세의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홍보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III. 맺 음 말

금년도는 2002 월드컵 개최, 양대선거 실시, 부산아시안게임의 개최 등 국제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해입니다만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고 자기의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세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과 아울러 우리의 고객인 납세자에 대하여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